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5
----------	----

제출년월일 : 1992년 6월 5일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 공무원 임용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자치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골자

- 6급상당이하 별정직 근무상한 연령의 연장조항을 신설함 (안 제7조)
- 별정직 임용자격 기준을 강화함(일반직 승진소요 연수와 균형유지) (안 별표1)
- 정원 감축된 전산직종의 임용자격 기준을 삭제함 (안 별표1)

3.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법 제2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공무원중 동장을 제외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7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하고, 근무상한 연령연장은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연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1〉 제1호중 화생방지도원란의 6급상당란의 임용자격란 제2호중 “2년”을 “3년”으로 하고

〈별표1〉 제2호중 전산처리사란, 기계처리사란, 전산전기기사란, 전산기계기사란, 천공원란을 삭제한다.

〈별표1〉 제3호중 부녀상담원란의 6급상당란의 임용자격란 제4호중 “2년”을 “3년”으로, 동란의 7급상당란의 임용자격란 제3호의 “2년”을 “3년”으로, 동란의 8급상당란의 임용자격란 제3호의 “1년6월”을 “2년”으로, 가정상담원란의 6급상당란의 임용자격란 제3호중 “2년”을 “3년”으로, 동란의 7급상당란의 임용자격란 제3호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별표1〉 제6호중 지도사란의 6급상당란의 임용자격란 제3호중 “2년”을 “3년”으로, 동란의 7급상당란의 임용자격란 제4호중 “2년”을 “3년”으로, 공과금요원란의 8급상당란의 임용자격란 제2호중 “1년6월”을 “2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별표1)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					(별표1) (현행)				
1. 비상대비업무분야					1. (현행)				
직명(위) 및 업무구분	직급	직무내용	임용자격	근거	직명(위) 및 업무구분	직급	직무내용	임용자격	근거
화생방 지도원	6급 상당	(생략)	1. (생략) 2. 화생방요원(7급상당)으로 <u>2</u> 년이상 근무한 자.		화생방 지도원	6급 상당	(현행)	1. (현행) 2. <u>3</u> 년.....	
2. 전산분야					2. (삭제)				
3. 부녀청소년, 아동복지분야					3. (현행)				
직명(위) 및 업무구분	직급	직무내용	임용자격	근거	직명(위) 및 업무구분	직급	직무내용	임용자격	근거
부녀 상담원	6급상당 (수석 상담원)	(생략)	1~3 (생략) 4. 부녀상담원(7급이상)으로 <u>2</u> 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부녀 상담원	6급상당 (수석 상담원)	(현행)	1~3 (현행) 4. <u>3</u> 년.....	
"	7급상당 (일반 상담원, 윤락여성 상담원)	"	1~2(생략) 3. 부녀상담원(8급상당)으로 <u>2</u> 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7급상당 (일반 상담원, 윤락여성 상담원)	(*)	1~2(현행) 3. <u>3</u> 년.....	
"	8급상당 (*)	"	1~2(생략) 3. 부녀상담원(8급상당)으로 <u>1</u> 년6월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8급상당 (*)	(*)	1~2(생략) 3. <u>2</u> 년.....	

현행					개정안				
직명(위) 및 업무 구분	직급	직내 무용	임용자격	근거	직명(위) 및 업무 구분	직급	직내 무용	임용자격	근거
가정 상담원	6급상당 (수석 상담원)	(생략)	1~2. (생략) 3. 가정상담원(7 급이상)으로 2 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가정 상담원	6급상당 (수석 상담원)	(현행)	1~2. (현행) 3.3 년.....	
	7급상당 (일반 상담원) (’88.8.16 신설)	(생략)	1~2. (생략) 3. 가정상담원(8 급이상)으로 2 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급상당 (일반 상담원) (’88.8.16 신설)	(현행)	1~2. (현행) 3.3 년.....	
6. 행정관리분야					6. (현행)				
직명(위) 및 업무 구분	직급	직내 무용	임용자격	근거	직명(위) 및 업무 구분	직급	직내 무용	임용자격	근거
지도사	6급상당 (진흥 계장)	(생략)	1~2 (생략) 3. 일반직7급(별 정직7급상당 포함)으로 2년 이상 전전생활 분야 행정근무 경력자 4. (생략)		지도사	6급상당 (진흥 계장)	(현행)	1~2 (현행) 3.3년 4. (현행)	
	7급상당	(생략)	1~3 (생략) 4. 일반직8급으 로 2년이상 전 전생활분야 행 정근무 경력자			7급상당	(현행)	1~3 (현행) 4. 3년.....	
공과금 요원	8급상당	(생략)	1. (생략) 2. 9급(상당)이 상 공무원으로 서 공과금경력 이 1년6월이상 인 자		공과금 요원	8급상당	(현행)	1. (현행) 2.2년.....	